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0일, 안상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2025. 11.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11.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개정안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현행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등에 한정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관련 입법례로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에서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신규 제도 수용성 강화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교육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신규 제도 수용성 강화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신규 제도 수용성 강화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기관·시설 등의----- ----- -----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u><삭 제></u>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기관·시설의----- -----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u><삭 제></u>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	<u><삭 제></u>	

<u>4호에 따른 장기</u> <u>요양기관</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1년</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	--	---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의”를 “기관·시설의”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생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 고의무자가 소속된 <u>다음 각 호</u> <u>의 기관의</u>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u>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u>기관·시설</u> <u>의</u> ----- ----- ----- <u>실시</u> <u>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u> <u>기관의 장에게</u> ----- -.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삭 제>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u>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u> <u>원 및 종합병원</u>	<삭 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u>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u>	<삭 제>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